

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(참조 : 기업복합도시과장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litm.go.kr>) 종보미당/법령정보/입법 예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한·반·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죽양동 1번지 경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(전화 : 02-2110-6187 또는 02-2110-8185, FAX : 02-503-7309)

④국토해양부공고제2010-481호

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2010년 6월 1일

국토해양부장관

1. 법인의 명칭 : 한마다 2호 선박투자회사

2. 법인의 대표자 : 정선숙

3. 본점의 소재지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총지원센터 관리사무처

4. 설립 자본금 : 금50,000원

5. 설립 목적 : 선박 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신한 후 그 대신료와 선박 대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

6. 선박투자업 인가일 : 2010년 5월 26일

⑤중소기업청공고제2010-98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6월 1일

중소기업청장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른 재래시장 명칭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재래시장」 명칭을 「전통시장」으로 변경

법 명칭의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의 명칭 변경

나.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규정

상인조직의 대표자가 구역 지정신청서를 시·군·구청장에게 제출하면, 시·군·구청장은 구역 신규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, 시·도지사는 예산 및 관련 법령 절차 등을 거쳐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며, 변경절차는 신규절차와 동일.

다.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·승인

상권활성화사업계획은 시·군·구청장이 수립하여 주민공단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제출, 법 제19조의5 제3항에 의한 활성화사업계획의 경비면 면경 사항에 대하여 규정되며, 상권관리기구의 운영

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상권관리기구에는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할 관련분야 전문가를 둠, 중소기업청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, 상권관리기구의 관리·감독을 위한 상권 활성화사업추진단을 구성함.

마.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

법 제19조의8 제3항에 의한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,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,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함.

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한·반·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*보내실 곳 : 대전 시구 둔산동 920 중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시장관과(전화 : 042-481-8929, Fax : 042-472-7935)

⑥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-127호

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승인(등록) 공고

『식품위생법』 제18조 및 『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(식약청고시 제2009-198호)』과 『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GA21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,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신규 승인 하였으며, 또한, 안전성 심사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(NK603, T25)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NK603×T25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,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신규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신규 등록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6월 1일

식품의약품안전청장

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승인 및 신규 등록 품목

1. 신규 승인 품목

대상품목	신청자	개발자	개발국가	승인번호	승인일	비고
유전자재조합 옥수수 GA21	신젠타 Synenta	미국	제2010-2호	2010.5.26.	상품명 : Agrisure GT	